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창작 장비 이용 지침

제정 2020.10.14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이하 '제주콘랩'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창작 장비 이용에 필요한 대상, 조건, 시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작공간 및 부속품) 제주콘랩 창작 장비의 이용공간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스튜디오(스튜디오1) : Sony, Canon, 배경지, 블루스크린, 부조정실 등
2. 녹음실(스튜디오2) : iMac, 마이크, 콘솔 등
3. 편집실 : iMac Pro
4. 시제품제작실 : Projet 3500, Lumo(M), CNC, 플로터 등

제3조(이용대상) 제주콘랩 창작 장비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스튜디오(스튜디오1), 녹음실(스튜디오2), 편집실은 제주콘랩 회원으로 한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장비운용 기본교육 이수자)
2. 시제품제작실의 Projet 3500은 제주콘랩의 선발심사를 거친 정규 프로그램 참가자 및 입주기업에 한 하고 Lumo(M)는 제주콘랩 회원으로 한다

제4조(3D프린터 지원사항 및 이용조건)

제주콘랩 3D프린터 지원사항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Projet 3500(고급형 3D프린터)은 월 최대 2회 출력에 한하여 1인당 출력물은 연간 500kg을 넘을 수 없고 (주재료 및 서포트재료 포함) Lumo-M(보급형 3D프린터)는 월 최대 4회 출력에 한하여 1인당 출력물은 연간 2kg을 넘을 수 없다(서포트재료 포함).
2. 시제품 프로토타입 프린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자, 3D 모델링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제작지원 받는 자는 결과자료(출력물 사진)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제주콘랩은 프로그램 및 운영상 필요에 한하여 지원 사항 및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제주콘랩 창작 장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스튜디오(스튜디오1), 녹음실(스튜디오2), 편집실, 시제품제작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운영자의 관리하에 20:30까지 연장 할 수 있다.
2. 창작장비 담당자의 기술지원은 평일 09:30 ~ 18:00까지로 한다.
3. 제주콘랩 프로그램 및 운영상 필요에 한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제주콘랩 창작 장비 이용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스튜디오(스튜디오1), 녹음실(스튜디오2), 편집실, 시제품제작실은 제주콘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2. 제주콘랩 프로그램 및 운영상 필요에 한하여 이용신청 방법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준수) 제주콘랩 창작 장비 이용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주콘랩의 창작 장비이용은 제3조(이용대상)에 따른다
2. 창작 장비는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3. 창작 장비는 허가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조작미숙 등의 이유로 장비운용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

우 운영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랩의 시설, 기기, 장비, 비품, 기타 잡기 등이 파손, 훼손,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8조(이용수칙) 제주콘랩 창작 장비 이용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스튜디오(스튜디오1), 녹음실(스튜디오2), 편집실, 시제품제작실 출입할 때는 운영자가 동행해야 한다.
2. 제출한 제작지원서 및 대여 대장에서 제시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하드웨어 세팅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자와 상의한다.
4. 운영자의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 및 삭제하거나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
5. 외부장비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6. 하드디스크의 작업공간은 제주콘랩이 허용하는 부분에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7. 작업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저장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한다. 운영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남겨져 있을 경우 운영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8. 이용 중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운영자에게 알린다.
9. 이용 시 필요한 소모품은 이용자 본인이 준비한다.
10. 창작 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네트워크를 해킹하지 않는다.

제9조(이용제한) 제주콘랩 창작 장비는 각 호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 제5조(출입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주콘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공지한다.

제10조(손실에 대한 책임) 제주콘랩 창작 장비 손실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장비 또는 제작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기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원인과 책임소재를 고려하여 제주콘랩과 이용자 간의 협의로 비용 부담의 비율을 결정한다.
2. 장비가 분실되었을 때, 이용자가 동일한 모델로 대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실장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영자와 함께 협의 및 장비테스트를 해야 한다.
3. 변상은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에 변상을 완료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변상 시점과 변상방법을 약속, 합의하여야 한다.
4. 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콘랩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